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22 \_ 2015년 09월

이 사람의 향기 |

장애인의 당당한 여행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 <전윤선 한국장애인문화관광센터 대표/여행작가>

포커스 |

지자체 행사의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실태

민선6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장애인정책공약

이슈포착 |

쉽게 풀어보는 영국 사회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 내 삶으로의 온전한 복귀

준비 없는 사회복귀가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스템도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4년 전부터 사회복귀시스템(Transitionz) TR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TR프로그램에는 뉴질랜드의 자립생활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 CONTENTS

|    |          |  |
|----|----------|--|
| 02 | 이미지 단상   | 내 삶으로의 온전한 복귀  |
|    | 편집자 편지   | 그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
| 04 | 의정토론보기   | 아는 것이 힘, 전동 휠체어 안전교육                                 |
| 06 | 이 사람의 향기 | 장애인의 당당한 여행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br>— 전윤선 한국장애인문화관광센터 대표/여행작가 |
| 15 | 포커스1     | 지자체 행사의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실태                              |
| 20 | 포커스2     | 민선6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장애인정책공약                           |
| 26 | 이슈포착     | 쉽게 풀어보는 영국 사회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
| 32 | 생활속 모니터링 | 너의 목소리가 들려 — 이동한 지방의회 의정 모니터단원                       |
| 36 | 생활속 모니터링 | 투명한 소통<br>— 김규린(리디아)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모니터단원                |

#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부터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직을 맡게 된 박주희입니다.

지난 2010년 장애인복지현장에 첫 발을 내딛은 후, 도의원과 국회 보좌관직을 수행하며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얻고 다시 사회복지현장으로 복귀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 삶의 화두는 늘 ‘사회복지’ 였던 만큼 현장으로의 복귀는 설레임을 얻기에 충분하지만 한편으로는 묵직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하는 모습만이 그동안 저희 센터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며, 센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잊지않고 소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모니터링 리포트 22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실태와 장애인의 관광향유권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여전히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와 날로 높아지는 장애인의 여행 욕구에 비해 나아질 줄 모르는 관광현실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찬찬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1일, 부산에서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8월말 기승을 부리는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하셔서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관광환경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과 그 대안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날 무렵,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여성활동가께서 할 말이 있으시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평소 이런 토론회에 관심이 많아 정보를 듣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서 활동한지 적어도 10년은 지났을텐데 가만히 듣고 있다보니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뭘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일에 힘을 덜 들였거나, 아예 힘이 없는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활동을 시작한지도 1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간 센터에서 쏟아낸 결과물들이 센터의 기본목표인 장애인정책의 발전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있는 힘을 다하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 답을 하기에 다소 머뭇거리게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을 키우고, 또 그 힘을 제대로 쓰기위해 그 기본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부산 토론회에서의 여성 활동가께서 저희들에게 던져주신 질문의 답을 결국 기본에 더욱 충실했을 때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박주희

# 아는 것이 힘, 전동 휠체어 안전교육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는 편리한 이동장비로,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 사고위험도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자들이 주로 차도를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의 관리가 미흡(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불필요한 블라드, 높은 턱 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는 점, 사고발생시 명확한 보상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자들은 자칫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에 있어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 않고 있어, 구매 후 안전교육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한 측면은 각종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등포구에서는 구예산을 반영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는 발언에서는 행정부의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문제점을 꼬집는 동시에 상시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교육체험장’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자와 보행자,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내용에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사용방법, 관리법, 도로에서의 안전수칙, 사고발생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제 주행 연습 등 실기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나 의회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만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안전사고방지 대책은 죽음을 동반한 사고·화재, 승강기 추락, 폭행 등·가 발생해야 반짝 주목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져도 임시방편일 때가 많다. 하지만 휠체어 관련 교통사고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어도 앞에서 언급한 수준의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어느 정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5년 07월 13일, 영등포구의회 제189회 본회의 제2차 발언 중

허홍석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 출신 허홍석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막중하게 부여해주신 책무를 안고 구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시작한 의정생활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략) 다음은,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체, 시청각 등 등록 장애인만도 1만 5,7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안전문제는 안전 영등포를 가늠하는 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가를 인도부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조성되는 도로에는 규정에 의거 장애인 이동편의가 설계단계부터 반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존 인도에는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멀쩡한 인도에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서 블라드 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지반 참하와 가로수 뿌리 노출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 일반인들도 걷기 불편한 거리가 많습니다. 연말이면 예산 낭비 단골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보도블록 교체가 아니라 꼭 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는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심각한 곳부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현재 영등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스쿠터 안전교육을 계속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향후 어린이와 학생, 일반인들도 장애인 안전교육체험의 기회를 넓혀 장애인과 상생하는 안전한 영등포 구현을 위해 영등포 장애인 안전교육체험장을 신설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하 생략)

## 장애인의 당당한 여행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

인터뷰 · 정리 박동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전윤선 한국장애인문화관광센터 대표/여행작가

8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의 한 카페에서 전윤선 작가를 만났다. 장애인의 여행을 위해 불철주야로 다니는 전윤석 작가에게서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의 여행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은 물론이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는 전윤선 작가. 장애인의 여행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누려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여행권이 더욱 보장되기를 기대해본다.

**Q**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많은 일정 중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에 대해 짚막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문화관광센터 대표 전윤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질병에 의해서예요. 후천적인 질병에 의해서인데 근육병에 의해서 갖게 되었어요. 20대 중반정도까지 근육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직장을 다니기도 힘들어지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되었을 때가 30대 초반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근육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분들이 일상을 보내는 것과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말처럼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점차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직장을 다니기 어렵게 되면서, 그때와는 다른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다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Q** 장애인과 관련된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신건가요?

여러 군데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둔 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많더라고요. 장애인 관련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장애인 분야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Q** 그럼 장애인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하신 활동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협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장애인계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권에 대한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목발을 짚고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Q 특히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여행을 좋아했어요. 음... 제가 2005년도인가... 그 때 인도로 여행을 갔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너무 반대를 하더라고요. 인도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왜 가려고 하느냐고요. 인도는 나라가 워낙 사회적 인프라가 안 되어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인도가 법적으로는 계급제도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러나 처음 우려와 다르게 많은 경험과 감동을 받고 왔죠.

**Q 특히,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인도의 장애인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비장애인들과 분리되지 않은거예요. ‘아~ 여기는 천지가 장애인인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보면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그러는데 여기는 천지가 장애인인데. 특별하게 보지도 않네’ 라고 생각했어요. 인도사람들은 워낙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는 신기하게 보는 거였어요. 이것이 휠체어라는 이야기를 해주어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개념이 없는거예요. 제가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랬는데, 휠체어 주위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까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나봐요. 제가 앉아 있으면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동수단이 다녀서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요. 저를 줄서서 보는 거예요.

**Q 인도에서의 여행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인도 이곳 저 곳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화장실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물을 하루 종일 한 번도 마시지 않기도 했구요.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빵 한 조각, 인도차 짜이 한 잔 정도였어요. 여행을 다니다보면 물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콜라 같은 것 사서 한 모금씩만 마셨어요. 딱 목을 축이고 입 안만 적실 정도로만요. 물갈이를 해서 흑시라도 배탈이라도 날까봐 늘 걱정이 되었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 그것은 정말 중요

해요.

그리고 인도여행 중 사막을 지나갔을 때 일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사막에는 못 가거든요. 휠체어 바퀴가 사막 모래에 휠체어 바퀴가 사막 모래에 폭 빠지기 때문에 낙타를 타야 되는데 말과는 달리 낙타는 바닥에 앉기 때문에 올라타기가 쉬워요. 그렇게 다니다가 낙타에서 내려오면 휠체어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기어다녔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볼 일 보고 엮어놓은 다음에 다시 기어다니면서 여행을 했고요.

**Q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그 외에 여행 중 다른 에피소드는 없으셨는지요?**

여행을 할 때 챙겨갔던 상비약이 있었는데, 그 상비약을 인도에서 오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후원물품도 가져가서 전달했어요. 그리고 오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금마련을 했었어요. 그 때 여행을 환경운동하는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인도에 가서 현지 인적 자원을 활용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대한 여행경비를 아끼고, 현지사람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했어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예전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여행을 했거든요. 주위가 전부 장애인이고 사막마을이면서 어느 곳이나 장애인들이 있는데 상황이 너무 열악했어요. 어딘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한 번 가려면 일주일의 나가는 하거든요. 어떤 분은 팔이 부러져서 지지대로 팔을 고정해야하는데 고정할 줄도 모르고, 병원에도 못가니까 똑바로 고정 안된 상태로 부러진 뼈가 붙어버렸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다치고 나면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하는데 위생개념이 별로 없어서 제 때 소독하고 치료하지 못해서 상처난 게 깊어가지고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그 분은 허리 때문에 기어다니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소독을 해드리니까 금방 나오시더라고요.

**Q 여행작가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여행이 끝나고 여기로 돌아와서 인도 다녀왔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거예요. 여기 저기서 알게 되고 저에게 강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경험한 바에 대해서 경험을 글로 쓰는 건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발표도 하고 칼럼도 쓰고 에이블뉴스 같은 곳에 글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혼자 하지 말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 창구를 만들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휠체어배낭여행 카페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 때는 장애인이 여행을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애인들이 집에서 나오기도 힘든데 무슨 여행이야 라고 일반적인 인식이 그랬어요. “장애인이 무슨 여행이야. 몸도 불편한데 무슨 여행이야.”

**Q** 전윤선 작가님께서 장애인들의 여행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신거네요.

제가 인도에 다녀오고 나서, 그리고 온라인 휠체어 배낭여행 카페를 만들고 나서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 뚜렷한 목표가 생긴거예요. 저에게 여행에 대한 갈증이 있던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행 다닐 수가 없던거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올림픽공원을 간다면 공원 이 곳 저 곳을 샅샅이 둘러봐야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휠체어로 가야하니까요. 게다가 휠체어는 다른 사람이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곳으로 다녀야 하고, 심하게 말하면 끌려다니는거라고 할 수 있죠. 밀어주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거요. 저는 그건 여행이 아니다. 그건 끌려다니는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장애인이 혼자 여행을 가면 뭐하나 접근할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처음으로 전동휠체어로 정동진으로 여행을 갔어요.

**Q** 정동진 여행은 어떠셨는지요?

정동진에 가면 지금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장애인이 되기전에 여행을 다녔던 곳이나 쉽게 생각해서 갔었는데 장애인화장실도 없고 장애인편의시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 얻어먹으러 왔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없고 식당 출입문에 턱이 있고 들어가려고 하면 불편하구요. 또 사람들이 장애인들 재수없다고, 천원주고... 빨리 꺼져 그러는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식당은 물론이고, 숙소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숙소출입구에도 턱이 있구요. 더욱이 출입문 턱이 있어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숙소 주인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되는거예요.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조금씩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장애가 없었을 때 다녔던 곳부터요.

**Q**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많이 보고 느끼고 하셨겠네요. 그러면서 휠체어 여행과 관련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온라인 카페를 2008년인가 그 때 정도에 만들었을 거예요. 카페를 만들었는데 장애인들이 카페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장애인 여행 카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모(정기모임)를 하고 번개(갑작스럽게 소집된 모임)를 했어요. 정모를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끌고 오시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구요. 휠체어 사용하는 분들 20명 모이는 거랑 비장애인 20명 모이는 거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저는 그 모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다들 여행에 대한 욕구가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애인들이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에게 “마음껏 돌아다니 보세요.”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될 봐야될 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 분들에게 그럼 저랑 같이 다니면서 여행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같이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식당 찾는 것, 차 한잔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번개형식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장애인들끼리 언제까지 다닐 거냐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끼리 다니다보니까 다들 장애인들 집회가 있냐고 그러는거예요.

여행을 다니려면 정보를 찾아야 하잖아요. 숙박지도 찾아야 하고 동선도 짜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자립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종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동선을 짜본 적도 없고 숙박지를 짜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A라는 곳에 네명정도 같이 갈테니까 표는 어떻게 끊어야 되고 숙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먼저 시범을 보여요.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배우는거죠. 이런 다음에 동료들끼리 가세요라고 하면서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어요.

**Q** 전문선 작가님께서 장애인들이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모임에 참석하시는 장애인들이 여행에 대해서 점차 적극성을 갖게 되셨는지요?

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점차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여행하고 그러는게 장애인들에게는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고요. 자립생활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이미 그 프로그램들을 다 경험했고, 여행이 제일 마지막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을 한다는 것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죠.

**Q** 그 만큼 장애인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가 엄청난거네요.

네. 맞아요. 저도 2005년 2006년에 장애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인도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었죠.

서울시에서 예전 이명박 대통령 때 APEC회의가 있었어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여행 가이드 양성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거 하면서 서울시가 가장 먼저 장애인여행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여행에 대해서.. 여행이 필요하구나라는 이런 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Q** 우리나라가 장애인 여행과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도 하고,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가님께서 특히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개정도 많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소득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이 여행 다니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관광지에 있는 숙박업소와 여행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있고 안 되어있고 그런 걸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이 목적으로 하는 관광지에 가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장애인들에게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장애인 자신이 노출되잖아요. 노출되어야만 사람들이 저 장애인 다니는구나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어디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개선이 되죠. 기차에 장애인석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장애인콜택시가 확대된다든지. 서비스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고객이라고 인식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있을 거구요. 인식개선에 있어서도, 서비스직 직원들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구요.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장애인들에게 밥을 안주려고 해요. 휠체어가 테이블이랑 다른 시설들에 부딪혀서 부서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장애인도 여행을 하는 것에 예의범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장애인의 대표라고 생각해야 하고, 나는 장애인의 대표성을 띄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여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해요. 숙박업소에 가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면 지저분하게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정리를 하라고. 지저분하게 이용하면 나 이후로 다른 장애인들이 못온다.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강조하죠. 여행을 가면 돈 쓰고 욕먹지 말고 돈 쓰고 당당하게 하자. 차별받지 말자라고 말해요.

**Q** 그 외에 전문선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인 여행과 관련된 제도정책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여행프로그램 안내책자에서 다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여행지가 너무 좋아요. 여행을 가고 싶게끔 하잖아요. 그렇게 장애인 대상의 여행지도 장애인들이 여행을 가고싶게끔 여행프로그램 안내책자가 제공되면 좋겠어요.

이 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이라든지 법적인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행지에 있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다하고 나서 그 것처럼 다시 복구한다는거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막아야죠. 제 생각에는 준공검사 하고 나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의무조항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다시 복구하면 훨씬 더 큰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들도 돈이 있어야 여행을 다닐 수 있잖아요. 장애인들 여행 바우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문화바우처가 있지만 문화바우처를 가지고 영화관람, 도서구입... 그렇게 하기에 부족해요.

또한 여행지에 있는 음식점... 모범음식점만 하더라도 관광지에 접근가능한 시설,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 지정되는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외에도 너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여행을 가서 접근할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경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다보니 관리가 안돼요. 화장실에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화장실이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다음에 다시 요청해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아직 이야기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많아서 아쉬워요. 다음 기회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 지자체 행사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실태

유진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2012년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지자체(행사시) 보조자료제공 및 정보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22조 3항<sup>1)</sup>에 근거하여 지난 4월에서 7월 4개월간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53개 행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sup>2)</sup> 11개 지역은 시각장애인 거주 인원이 많은 광역시도 6곳과 기초지자체 각 1곳을 재선정하였다.(<표1> 참조, 여수시는 제외) 모니터링 대상 행사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15조<sup>3)</sup>에 근거하여 자료제공 의무가 있는 행사(국경일: 제헌절, 광복절, 기념일: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현충일) 7개와 기타 문화 행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 해당 모니터링은 9월까지 계속 진행 예정. 시각장애인 만족도 조사와 기초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예정.  
3) 제15조(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표1〉 시각장애인 등록 인구 현황

(단위: 명)

| 시도    | 시각장애인 등록 |        |        | 시군구 | 총합    |
|-------|----------|--------|--------|-----|-------|
|       | 남        | 여      | 합계     |     |       |
| 경기도청  | 30,893   | 19,194 | 50,087 | 수원시 | 4,293 |
| 서울특별시 | 26,197   | 16,830 | 43,027 | 노원구 | 2,805 |
| 부산광역시 | 11,051   | 7,303  | 18,354 | 진구  | 1,973 |
| 경상북도  | 9,689    | 7,364  | 17,053 | 포항시 | 2,772 |
| 경상남도  | 10,125   | 6,805  | 16,930 | 창원시 | 4,716 |
| 전라남도  | 8,270    | 6,524  | 14,794 | 여수시 | 2,123 |

(2013년 12월 장애인 등록 현황 기준)

### 시각장애인 등록 현황 및 기회균등에서의 정보제공의 필요성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출현은 인구 1,000명당 6.34건으로, 시각장애인은 309,1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각장애는 대개 시력의 정도로 판별하게 되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저시력(Low Vision)과 실명(Blind)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시력은 고도의 학습·작업 활동에 지장이 많으나 기본 사회생활은 가능한데 반해 실명은 가정을 비롯한 기본 생활도 단독으로 하기 힘든 정도를 말한다.<sup>4)</sup> 이렇듯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 시야의 범위에 따른 주변시력의 감퇴 등으로 시 기능의 현저한 저하(또는 소실)를 지닌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특히 보고 얻는 정보에 차단되어 있어 청각 및 촉각각 중심의 지식으로 외부의 정보를 획득하므로 비시각장애인들과는 다른 방식의 외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시각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각 장애유형별(동일한 장애유형에도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보 및 지식제공의 필요성은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1983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에도 이러한 의미의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sup>5)</sup> 또한 이에 대해서는 아·태지역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삶은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생활은 격리되어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자체 행사 모니터링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행사에서 비시각장애인과 동일하게 참석 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지,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배제되고 있는

지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 지자체 행사시 점자 및 음성변환용코드 보조자료 제공 현황

시각의 상실로 인한 어려움 중의 하나로 활자 인쇄물への 접근 불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활자 매체에의 접근 불가는 촉각과 청각을 이용한 매체로서 대체되어 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점자와 음성정보서비스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행사시 배포되는 자료가 촉각·청각 매체로 대체되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11개 지자체 및 중앙정부 행사 모니터링 현황

| 시도        | 행사명    | 지자체 행사 개최 수 | 시각장애인 보조자료 제공 수<br>(점자, 음성변환용코드 삽입 책자) |
|-----------|--------|-------------|--|
| 자료제공 의무행사 | 장애인의 날 | 12          | 4                                      |
|           | 어린이 날  | 10          | 0                                      |
|           | 아버지 날  | 6           | 0                                      |
|           | 스승의 날  | 2           | 1                                      |
|           | 현충일    | 9           | 0                                      |
| 기타문화행사    | 기타문화행사 | 14          | 1                                      |
| 총 합       |        | 53          | 6 (11%)                                |

4월에서 7월까지<sup>6)</sup> 11개 지역 및 중앙정부 행사 개최 수는 총 53건으로, 그 중 점자 및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보조자료 제공 수는 단 6건으로 11%에 불과하다.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는 행사에 국한시켜보면 행사 개최 수는 39건, 보조자료 제공 수는 5건으

4) 이를 더 세분하면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광각',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수동', 1m 전방에서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를 '지수', 일반 활자를 읽을 수는 없으나 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약시'라고 한다.

5)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정보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적절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 있으며, 이 책임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으로 정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중에게 정보를 보급하는 활동은 가장 적절한 정보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6) 7.17 제헌절은 메르스 여파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국회 제헌절 경축식은 초청자에 한해 행사참석이 가능하여 모니터링이 불가하였다.

7) 장애인들의 행사가 많이 예상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 또한 보조자료 제공이 42%에 그치고 있다.

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심지어 제공된 5건조차 장애인들의 참여가 많이 예상되는 장애인의 날에 대다수 몰려 있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제외하면 여타의 다른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경일·경축일을 제외한 기타 문화 행사는 전체 시민대상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에 의해 개최된 것에 한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지역 축제 및 행사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문화·여가를 즐기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정보 제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공된 1건의 점자 보조 자료는 '2015년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때 제공된 것으로 행사 주 대상이 시각장애인인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기타 문화행사에서는 점자 등의 보조자료 제공이 전무하였다.

〈표3〉 11개 지자체 및 중앙정부 기타 문화행사 현황

| 구분 | 기타 문화행사 목록              | 시각장애인 보조자료 제공 수<br>(점자, 음성변환용코드 삽입 책자) |
|----|-------------------------|--|
| 1  |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 0                                      |
| 2  | 2015년 수원국제연극제           | 0                                      |
| 3  | 놀라운토요일서울expo            | 0                                      |
| 4  | 제7회 태강릉초안산공중문화제         | 0                                      |
| 5  | 제8회 부산항축제               | 0                                      |
| 6  | 포항국제불빛축제                | 0                                      |
| 7  | 2015년 가정의달 기념행사         | 0                                      |
| 8  | 제22회 창원수박축제             | 0                                      |
| 9  | 2015년 아시아페스티벌           | 0                                      |
| 10 | 2015년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 1                                      |
| 11 | 2015년 수원시청소년어울림마당 5樂놀이터 | 0                                      |
| 12 | 노원구 등(燈)축제              | 0                                      |
| 13 | 제8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 0                                      |
| 14 |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0                                      |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시각장애인 보조자료 제공현황은 관련 장애인 복지법이 2012년에 개정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실적이 턱없이 미미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지점은 몇몇 지역은 현장 모니터링과 지자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남도청과 경남도청의 '장애인의 날' 행사가 이와 같다. 두 지역 행사 현장에서 제공받지 못한 점자 자료가 발행되었다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주최측에 문의한 결과 현장에서의 보조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경일·경축일 등의 행사를 위탁 혹은 후원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행사 주최측은 인력부족·자원봉사들에 대한 교육 미숙 등의 이유로 점자자료 등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절히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 등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매뉴얼의 부재가 초래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가며

〈지자체 행사시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현황〉 모니터링은 9월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모니터링과 별도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 '장애인의 날' 시각장애인 보조자료 제공현황을 정보공개요청 수집중이다.

또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 시각장애인의 5.1%에 불과했고, 현재 점자해독을 배우는 중에 있는 비율은 전체의 1.6%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에게 대체 매체로서의 선호도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시각장애인 문화·여가생활 정보접근권 욕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렇듯 보다 풍부한 자료 조사를 통해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대체매체 제공 현황과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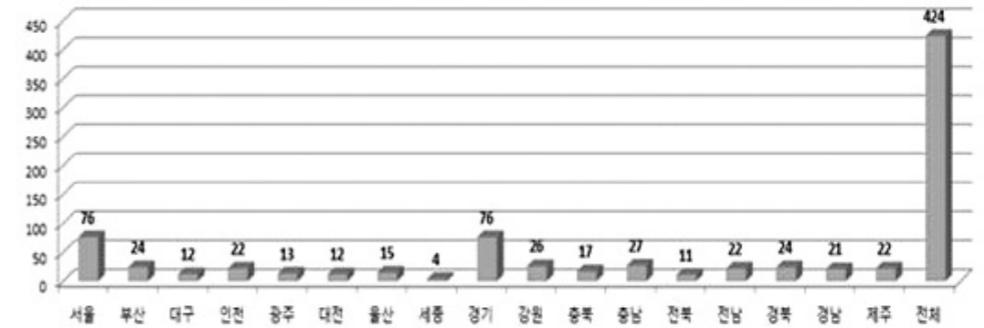
# 민선6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장애인정책공약

김애영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 들어가며

공약(公約)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유권자)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을 지칭하는 명사이다. 유권자들은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의 면면을 속속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후보자선전물에 나온 공약을 참고해 투표를 한다. 또한 공약의 내용은 향후 정부나 해당 지역의 정책의 방향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광역의회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 그리고 수많은 공약 가운데 장애인정책공약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17개 광역의회 의원 총 705명의 후보자선전물 가운데 '장애'라는 표현을 명기한 공약을 장애인정책공약으로 한정해 분류, 수집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같이 지칭하는 대상이 포괄적인 경우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교통약자'와 같이 그 대상이 장애인을 특정하고 있는 용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장애인정책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림1〉 6·4지방선거 광역의회 의원 지역별 장애인정책공약수



## 광역의회 장애인정책공약 전체현황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6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후보자 선전물을 모니터한 결과, 총 424건의 장애인 정책공약이 발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총 705명의 광역의원 중 장애인정책공약을 1건 이상 발표한 공약의원은 전체의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8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광역의원 1인당 평균 0.60개의 공약을 발표했음을 의미하며, 여전히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58.62%로 공약의원(1건 이상의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한 의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52.6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23.08%, 29.41%로 채 30%를 넘기지 못해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낮았다. 한편 광역시의회와 광역도의회의 평균 공약의원 비중은 각각 41.84%, 40.94%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정책공약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가 27건, 강원도가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의회 소속 의원들이 총 20건 이상의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의회의 규모와 의원수를 감안하더라도 단 4건이라는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1〉 17개 광역의회 장애인정책공약 전체현황

| 연번 | 지역 | 전체 의원수 | 의원수 (공약有) | 무투표 당선자 <sup>1)</sup> 수 | 공약수 | 공약 의원 비중(%) | 전체의원 1인당 평균 공약수 | 공약의원 1인당 평균 공약수 |
|----|----|--------|-----------|-------------------------|-----|-------------|-----------------|-----------------|
|    |    |        |           |                         |     |             |                 |                 |
| 2  | 부산 | 42     | 15        | 0                       | 24  | 35.71%      | 0.57            | 1.60            |
| 3  | 대구 | 27     | 9         | 6                       | 12  | 33.33%      | 0.44            | 1.33            |
| 4  | 인천 | 31     | 15        | 1                       | 22  | 48.39%      | 0.71            | 1.47            |
| 5  | 광주 | 19     | 10        | 1                       | 13  | 52.63%      | 0.68            | 1.30            |
| 6  | 대전 | 19     | 10        | 0                       | 12  | 52.63%      | 0.63            | 1.20            |
| 7  | 울산 | 19     | 8         | 0                       | 15  | 42.11%      | 0.79            | 1.88            |
| 8  | 세종 | 13     | 3         | 0                       | 4   | 23.08%      | 0.31            | 1.33            |
| 9  | 경기 | 116    | 44        | 1                       | 76  | 37.93%      | 0.66            | 1.73            |
| 10 | 강원 | 40     | 18        | 2                       | 26  | 46.43%      | 0.65            | 1.44            |
| 11 | 충북 | 28     | 13        | 0                       | 17  | 42.86%      | 0.61            | 1.31            |
| 12 | 충남 | 36     | 17        | 2                       | 27  | 47.22%      | 0.75            | 1.59            |
| 13 | 전북 | 34     | 10        | 5                       | 11  | 29.41%      | 0.32            | 1.10            |
| 14 | 전남 | 52     | 19        | 14                      | 22  | 36.54%      | 0.42            | 1.16            |
| 15 | 경북 | 54     | 18        | 17                      | 24  | 33.33%      | 0.44            | 1.33            |
| 16 | 경남 | 50     | 17        | 2                       | 21  | 34.00%      | 0.42            | 1.24            |
| 17 | 제주 | 29     | 17        | 0                       | 22  | 58.62%      | 0.76            | 1.29            |
| 합계 |    | 705    | 288       | 53                      | 424 | 40.85%      | 0.60            | 1.47            |

분야별 장애인정책공약

수집된 장애인정책공약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보았다. 분야의 구분은 모니터링센터의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의 장애인정책발언분류표를 이용했으며, 이 중 ‘복지일반’ 분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양이 많아 부득이 ‘시설/서비스’, ‘소득보장’, ‘정책/법제도’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장애인정책공약은 총 12개의 분야로 재분류했다.

장애인정책공약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시설/서비스’와 ‘정책/법제도’ 등 복지일반에 해당하는 분야가 각각 90건, 86건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공약건수가 많았다. 또한 ‘고용’과 ‘접근/이동권’이 90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2〉 분야별 장애인정책공약수

| 연번    | 지역 | 공약수 | 분야별 발언수 |       |        |       |      |     |       |        |        |       |     |       |
|-------|----|-----|---------|-------|--------|-------|------|-----|-------|--------|--------|-------|-----|-------|
|       |    |     | 복지일반    |       |        | 보건 의료 | 고용   | 교육  | 문화 체육 | 접근 이동권 | 정보 접근권 | 권익 옹호 | 여성  | 자립 생활 |
|       |    |     | 시설/서비스  | 소득 보장 | 정책/법제도 |       |      |     |       |        |        |       |     |       |
| 1     | 서울 | 76  | 15      | 0     | 18     | 1     | 14   | 3   | 3     | 13     | 0      | 4     | 1   | 4     |
| 2     | 부산 | 24  | 9       | 0     | 3      | 0     | 5    | 0   | 2     | 1      | 1      | 1     | 1   | 1     |
| 3     | 대구 | 12  | 3       | 0     | 0      | 1     | 4    | 1   | 0     | 3      | 0      | 0     | 0   | 0     |
| 4     | 인천 | 22  | 6       | 0     | 2      | 0     | 5    | 2   | 0     | 3      | 0      | 0     | 1   | 3     |
| 5     | 광주 | 13  | 1       | 0     | 3      | 0     | 5    | 0   | 0     | 3      | 2      | 0     | 0   | 2     |
| 6     | 대전 | 12  | 3       | 0     | 3      | 1     | 2    | 2   | 0     | 1      | 0      | 0     | 0   | 0     |
| 7     | 울산 | 15  | 6       | 1     | 1      | 0     | 4    | 0   | 0     | 2      | 0      | 0     | 0   | 1     |
| 8     | 세종 | 4   | 1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2     |
| 9     | 경기 | 76  | 12      | 1     | 12     | 5     | 21   | 3   | 4     | 10     | 0      | 2     | 1   | 5     |
| 10    | 강원 | 26  | 4       | 1     | 7      | 0     | 1    | 5   | 2     | 3      | 0      | 1     | 0   | 2     |
| 11    | 충북 | 17  | 4       | 0     | 3      | 0     | 5    | 0   | 2     | 1      | 0      | 1     | 0   | 1     |
| 12    | 충남 | 27  | 6       | 1     | 5      | 0     | 6    | 3   | 0     | 2      | 0      | 0     | 1   | 3     |
| 13    | 전북 | 11  | 3       | 0     | 2      | 1     | 2    | 0   | 0     | 0      | 0      | 1     | 0   | 2     |
| 14    | 전남 | 22  | 3       | 0     | 10     | 1     | 5    | 0   | 0     | 2      | 0      | 1     | 0   | 0     |
| 15    | 경북 | 24  | 6       | 0     | 5      | 2     | 3    | 1   | 0     | 4      | 0      | 0     | 1   | 2     |
| 16    | 경남 | 21  | 3       | 1     | 6      | 1     | 4    | 1   | 0     | 3      | 0      | 2     | 0   | 0     |
| 17    | 제주 | 22  | 5       | 0     | 6      | 1     | 3    | 1   | 3     | 2      | 0      | 0     | 0   | 1     |
| 합계    |    | 424 | 90      | 5     | 86     | 14    | 90   | 22  | 16    | 52     | 1      | 13    | 6   | 29    |
| 비중(%) |    | 100 | 21.2    | 1.2   | 20.3   | 3.3   | 21.2 | 5.1 | 3.8   | 12.3   | 0.2    | 3.1   | 1.4 | 6.8   |

또한 광역의원들의 관심이 ‘시설/서비스’, ‘정책/법제도’, ‘고용’, ‘접근/이동권’ 등 비교적 전문지식이 많지 않아도 접근하기 쉬운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로 확인했던 바와 유사한 경향이다.

1) 공직선거법 제12장은 당선인에 관한 규정으로, 이 가운데 제190조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에 올려진 6·4지방선거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선전물의 경우 무투표 당선자들은 공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무투표 당선자 중 서울 1명, 강원 1명은 공약이 기재됨)

이밖에 몇몇 분야를 제외한 ‘소득보장’, ‘보건의료’, ‘정보접근권’, ‘권익옹호’, ‘여성’ 등 대다수 분야에서 발언비중이 5%가 채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낮은 장애인정책 중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분야가 공약수립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정보접근권’ 분야는 총 424건의 장애인정책공약 중 단 1건만 발표되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를 민선6기 광역의회에서 의제로 다루기는 힘든 환경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장애인정책공약의 내용

앞서 공약을 지역별 공약수, 의원1인당 장애인정책공약수, 분야별 발언수 등 양적측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면, 이제 공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수집한 공약 중에는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보급되는 전동스쿠터 보험가입추진’ 이나 ‘기업의 장애인 채용 의무화에 대한 조례제정’, ‘장애인 휠체어에 맞춘 녹색보행 정책을 도입하여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및 도로, 인도 높이차 제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제 폐지 추진’, ‘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한 달 72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장애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들이 있었다.

〈표3〉은 총 424건의 장애인정책공약 가운데 다소 아쉬운 내용을 담고 있는 몇몇 공약을 추린 것이다. 해당 공약들은 ① ‘장애우’ 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 ② 광범위한 정책대상 설정, ③ 모호한 선언적 구호 ④ 구체적인 방법 부재 등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아쉬움과 실망감을 준다.

#### 〈표3〉 장애인정책공약의 내용

| 구분 | 내용  |
|----|---|
| 1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가 대우받는 사회약자층을 위한 정책개발                            |
| 2  | 장애인인권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 3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
| 4  |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   |
| 5  |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장애인들,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
| 6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생략) |
| 7  |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맞춤형복지공동체 구현   |
| 8  | 노인복지와 장애인을 돕겠습니다.   |
| 9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지원 확대   |

### 나가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6기 광역의회 의원들의 장애인정책공약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다소 장애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공약을 내걸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한 의원들은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또한 미처 공약을 준비하지 못한 의원들은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시민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장애인정책에 관심을 갖길 기대해본다. 또한 유권자들도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민선6기를 끝마치는 시점에는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장애인정책이 지역사회에서 통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쉽게 풀어보는 영국 사회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에서도 개인예산제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일단 찬반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다. 찬성측은 이용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반대측은 선택도 의미 있게 높아지지 않고 제도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양쪽 다 일리 있는 의견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의 부족으로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본고는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목적으로 영국의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영국에서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이야기의 시작은 1990년에 입법된 보수당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네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 1) 배경적 제도: 커뮤니티케어 개혁

1990년에 제정된 커뮤니티케어법에 의해서 지방정부는 서비스 신청을 받아 이용자격을 결정하고, 이용자격을 인정받은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서비스의 시장화가 이루어졌

다. 서비스 영역의 전면적인 시장화는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선택’이라는 명분을 표방하였다. 이 당시의 시장화의 원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과 유사한 것이다.

### 2) 1세대: 서비스 현금지급제도 도입과 확대

시장화 도입 이후에 영국의 장애인단체들은 시장화 개혁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높였는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조사연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선택권을 주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선택권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서비스에 투입되는 돈을 장애인에게 달라고 했다. 이 주장의 설득력이 인정되어 1996년 서비스 현금지급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법에서 서비스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18세에서 65세 사이로 제한되었다. 사실상 신체장애인에게 국한하여 도입되었던 제도이다.

2000년 이후 적용대상이 노인, 17-18세 청소년, 장애아동의 보호자, 발달장애인 등 성인 사회서비스(social care) 이용자 전체로 확대 되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물인 서비스 대신에 현금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라고 독려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선택하는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10-20%를 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현금을 받아서 스스로 서비스를 찾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었다. 둘째, 현금을 적절하게 썼다고 매월 지방정부에 가서 정산을 해야 했는데, 정산을 위해 기록하고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 번거로웠다. 셋째, 현금을 받아서 활동보조인을 개인이 고용하게 되면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단체는 정부가 또 한 번 선택을 주는 시늉만 했다고 비판한다.

### 3) 2세대: 1단계 개인예산제도의 개발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이용자는 사실상 신체장애인과 일부 노인으로 국한되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방정부가 조정해주는 현물서비스를 받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단체들이 연합하여 ‘In Control’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발달장애인도 서

서비스현금지급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모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모형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현금을 선택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당해 주는 지원서비스를 붙이는 것으로서, 이 지원서비스를 중개인 서비스(brokerage service)라고 하였고, 이를 담당하는 사람을 중개인(broker)이라고 하였다. 발달장애인이 현금을 선택하면, 이 돈이 발달장애인의 통장에 입금되고, 발달장애인은 통장을 broker에게 맡겨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broker에게 말한다. 그러면 broker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맞게 서비스를 찾아주고,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지방정부에 정산을 대행해 준다. 이 방식을 서비스 대신 현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현금지급제도와 구분하기 위하여 개인예산제도라고 하였다. In Control은 이 버전의 개인예산제도를 2000년도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여러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다. 서비스현금지급을 선택하는 사람은 현금을 받아서 스스로 지출하고, 개인예산을 받는 사람은 현금과 함께 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다. 이 당시까지 개인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정한 제도가 아니라 지방정부 단위의 시범사업단계였기 때문에 실제로 구분되어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3세대: 2단계 개인예산제도

1단계 개인예산제도는 현금에다 지원서비스를 부가시킨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정부의 책임성과 발달장애인이 자기주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지방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돈의 지출이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된 것인지,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자기주도적 지원(self-directed support)이라는 개념이 주장되었다. 이 개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계획(self-directed plan)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서는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바를 중심에 놓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족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작성한다. 그 다음에 이 계획서대로 비용을 집행해도 되는지를 지방정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관계된 기관을 이용하거나 발달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계획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필요한 훈련과정에 등록하거나 정부비용이 지불된다. 이 때 비용 지불을 지방정부에 위탁하거나 또는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방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스스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확정된 자기주도계획 중에 물건을 사야 하거나 개별적인 여가활동비 등으로 지출되어야 하

는 돈은 현금으로 받고, 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등의 돈은 지방정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이전하여 지출한다. 이 때 현금으로 받는 경우를 서비스현금지급이라고 한다. 현재 개인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지방정부에 시행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현금지급은 개인예산제도의 일부이다. 개인예산제도를 선택한 사람 가운데, 현금을 받아서 자기주도적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개인예산제도 이용자 중 현금지급을 선택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현재 영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전체(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social care) 이용자의 80%는 개인예산(자기주도적 지원)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예산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20% 정도가 현금지급을 이용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개인예산제도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 social care 이용자에게 적용되고 있고, 이 제도의 핵심 개념은 자기주도성(self-direction)이다. 영국에서 실제 제도가 적용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James는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다. 성인이 되면서 adult social care를 받기 위해 시에 서비스를 신청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2-3개의 질문에 체크할 있는 질문지가 온다. 이 질문에 틱 표시를 하여 시에 보내면 시에서 이를 확인하는 전화통화 또는 방문면접이 이루어진다. 틱 표시한 답변에 따라 James의 욕구는 위태로움(critical) - 상당함(substantial) - 중간(moderate) - 낮음(low) 중의 하나로 결정된다. 지방정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substantial 이상 등급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등급 이상에 해당되면 서비스 이용자격을 얻게 된다. 이용자격이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질문의 답변 항목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추정 지원금액(initial budget)을 산정하여, 이 금액을 알려준다. 대략 이 금액의 범위에서 자기주도 계획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 그러면 James와 가족은 함께 원하는 바를 만들어 본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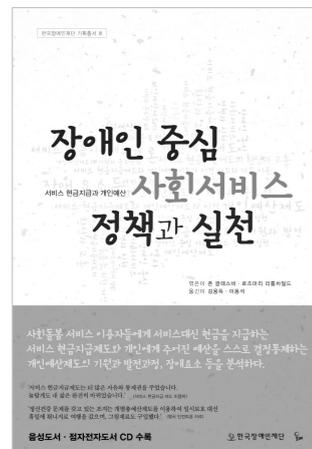
이 계획을 가지고 시의 담당자와 의논하고, 시의 담당자는 이 계획이 James의 의사를 잘 반영한 것인지, 실제로 실현가능한지, 계획대로 했을 경우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협의

1) 예를 들어 James가 농촌에 살고 있고,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면, (농촌지역이라 수요가 적어서 애완동물 용품가가 없다면) 애완동물 용품을 파는 가게를 열어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예산은 이 가게 창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경우에 현금을 받아서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James는 개인예산제도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현금지급 이용자가 된다.

하여 계획을 조정하여 확정한다. 계획이 확정되면 확정된 계획에 맞게 개인예산의 수정된 액수와 지출방법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한다.

현재의 영국 개인예산제도는 3세대 버전이다. 이 버전을 주도하는 슬로건은 개별적 유연화(personalisation)이다. 지원이 인간적이어야 함을 뜻한다.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는 이전의 경직적 예산(rigid budget)를 대체하는 것이다. 서비스(service) 중심의 예산(budget)에서 개인(individual) 중심의 예산(budget)으로 가자는 것이다. 3세대 버전의 개인예산제도의 중심은 현금을 지급하느냐에 있지 않다. 대신에 자기주도성에 방점이 있다. 정부의 딱딱하고 규칙에 맞게 배열된 서비스가 아닌 개인이 하고 싶은 바를 도와주는 유연하고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법이다.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표준화(standardization)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메뉴를 정하고, 각 메뉴의 가격을 정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서비스 양을 정하고, 이용자는 정해놓은 메뉴를 선택해서 이용하고, 여기에 정부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표준적 모습이다. 그리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서로 양해하여 메뉴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 부정수급이 된다. 메뉴에 없는 서비스가 진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인 경우에도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이것이 표준화(standardization)의 모습이다. 인간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제도의 실행을 위한 서비스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은 바로 이 표준화의 과정이다. 이 표준화의 반대말이 개별적 유연화(personalisation)이다. 메뉴를 미리 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정해진 비용의 범위에서 진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창의적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래서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 자기주도적 지원(self-directed support), 개별적 유연화(personalisation)은 닮거나 같은 모습이다. 서비스 문화의 큰 흐름을 제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총체적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문화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활동지원제도,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의 모든 서비스 제도와 기관에 적용되는 문제제기이다. 개인예산제도는 사람 중심의 제도, 사람중심의 기관으로 변신해야 하는 인간적인 압박이다.

# 너의 목소리가 들려

글 이동한 지방의회 의정 모니터단원

## 1. 의정모니터링 일상

의회의 회의는 내 일상의 첫 시간표이다. 나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의정모니터링을 시작한다. 광역의회 모니터링부터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의회 모니터링을 함께 하고 있다. 회의가 홈페이지에 한 번에 올라오거나 조금 터울을 두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긴장의 끈을 놓고 하루 이틀 미뤘다가는 모니터링을 해야 할 회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린다. 모니터링은 무척 꼼꼼한 작업이다. 의원의 발언을 어떤지 주제별로 분류해야 하고, 어떤 방향과 의도 발언을 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발언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살펴봐야 한다. 모니터링이라는 작업은 객관적인 눈이 필요하다. 적어도 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내가 직접 의회 회의를 참여하여 회의의 분위기나 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 내용을 탐독하고 주제에 알맞은 발언을 기록하는 게 모니터링이다. 즉 텍스트를 통해 회의장의 분위기나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혼자서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발언분류를 해야 하는데, 저게 이 분류 같고 이게 저 분류 같았다. 도저히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아 오래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능숙하게 발언을 찾아내어 시간도 단축하고 리듬감이 생겨 작업을 즐기는 편이다.

의정모니터링을 시작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모니터링하면서 느꼈던 점이 적지 않다. 그 중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던 감정이 있는데, “내가 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이다. 마치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같은 철학적 물음이 계속 생긴다. 마땅한 답을 얻고 돌아간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왜 의정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물음을 생각할 겨를 없이 의회 회의는 발언

과 질문, 응답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된 내용을 나눌 때 긴장감이 느낀 때도 있고, 매우 집요할 때가 종종 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 회차 회의가 장애인복지정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다른 회의에선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 의정회의에서 발언 발생을 따지면 한 곳에 너무 몰려 있는 것이다. 나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장애인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떤 공간과 시간에서든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보호의 객체는 주체도 객체도 1차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즉 내 안전에 관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관심이 더욱 간다. 나 또한 장애인복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장애인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의정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는 대답이 없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동이 트고 석양이 지듯 (단지 계절에 따라 해가고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내게 모니터링은 일상이 되었다. 단지 충실히 살아갈 뿐이다. 그러다 보면 변화하는 것이 또한 일상이므로 재밌는 삶이 될 거라 믿는다.

## 2.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의정모니터링은 텍스트를 탐독하는 것이다. 어째서 탐독일까. 탐독의 사전적 의미로 ‘다른 일을 잊을 정도로 열중하여 읽다’, ‘어떤 글이나 책을 열중하여 읽음’이다. 열중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열중하며 읽는다는 말, 오롯이 텍스트에 집중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기분은 비단 단어에 그치지 않는다. 의원들의 질문 텍스트에도 공무원의 대답 텍스트에도 모든 대화의 텍스트에 그림 한 장 한 장 펼쳐지기도 한다. 그들의 생동감 있는 대화에는 우리 생활 가정 밀접한 현실이 들어있다. 물론 필요한 정책을 펴기 위해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 자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현실자체이지만,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의원들의 말투나 어휘에서 회의장의 분위기와 안건의 중요성 등등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비판적이고도 직접적인 그들의 대화는 분명히 역동적이다. 하지만 그만큼 격렬하기에 언어가 낭비되기도 하고 과소비되기도 하는 것 같다.

어느 지방의 의원은 대화에 끼지 못할 때도 있으며, 적절치 못한 단어선택에 대한 지적을 호방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때로 과하게 호방하여 회의의 질을 다소 떨어뜨리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그건 의원의 학벌이나 경력, 공무원의 지위나 스펙과는 무관했다는 것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오해의 여지없이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이러한 회의 분위기가 무척 좋다. 전투의 현장처럼 치밀하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나 또한 현장에서 한 명의 병사로 싸우고 있는 기분이 든다. 현장에서는 누구나 평등해 질 수 있다. (물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선 다르겠지만)

각 지방의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며 누구든지 회의록을 볼 수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가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지거나 막히다.’ ‘가리다’ 이 자동사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가리지 않는다.’ 라고 부정의 의미를 덧대는 순간 매우 수용적 태도로 돌변한다. 의정회의가 이처럼 비판적인 견해들이 모여 수용적인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나아가 국정을 경영해 나가는데 괜찮은 방법이 되었으면 한다.

### 3. 심봤다(?)

나는 아직도 고민 중이다.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말이다. 이는 평생을 두고 해나 갈 고민이다. 생 자체가 모순이다. 처음엔 장애인관련 지역사회 사업의 시행과정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다면, 지금은 별다른 감정 없는 기계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불발이라도 되면 분개는커녕 불발의 사유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깜짝깜짝 놀란다. ‘모니터링이 의회에 과연 영향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한다. 아무리 회의록을 살펴봐도 딱히 무언가 변했다거나 의식하는 모습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예전보다 많이 변했다고 한다. 우선 적어도 감을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권을 해치는 사례가 줄었다고 했다. 반말이나 모욕적인 언사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전에는 어땠는지 간에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은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딱히 위화감은 없다. 오랜 시간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일상이 지루하기도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나보다. 이러한 심리를 다잡을 수 있는 건 역시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는 것 밖에 없다. 발언의 핵심을 찾아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 보일 거다. 복지국가에 얼마큼 다

다랐는지, 앞으로 나아갈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고, 예측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믿음이야말로 모니터링의 가치이다. 모니터링이 발견하고 기록하는 건 정책이나 사업뿐만 아니다. 우리가 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어떤 가치있는 모습이 있고, 다음 세대나 앞으로의 사회에 일러주는 역사적 책임을 발견할 수 있다. 책임감은 일상을 건디는 훌륭한 버팀목이 된다. 나는 이 책임감이 의정모니터링 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



## 투명한 소통

글 김규린(리디아)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모니터단원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모니터링을 위해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장애인콜택시 안에서 얼마 전부터 재개발 중인 아파트를 바라본다.

땅을 고르고 뼈대를 만들어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는 건물을 보며 ‘사람의 몸도 온전히 재생 할 수 있다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본다. 우리네 인생 탑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크게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자동차가 반파된 시점부터 내가 꿈꾸던 삶의 방향이 뒤틀어졌다. 몸은 운동과 감각의 자유를 상실하였고 이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이 없어졌고 갈 수 있는 곳도 한정되었다.

그렇게 수년을 나만의 공간에서 지내다 올 3월, 몸이 더 아프기 전에 어디든 다녀보자는 결의를 굳히고 인터넷 세상을 배회하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매번 물리적 거리에 막혀 포기하던 중 울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주 1회 왕복 세 시간 포항과 울산을 오가며 장애인 당사자 인권 강사 양성 강의를 듣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자체 행사시 점자 및 음성변환용 코드 자료제공 현황 모니터링 단원 제의를 받았다.

‘아...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큰 어려움은 없겠구나.’ 쉽게 수락한 만큼 비교적 가볍게 접근했었다. 하지만 생각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모니터링이 거듭 될수록, 중도장애인으로 삶의 척도가 바뀐 후 줄곧 장애의 주류는 지체장애인이라 생각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외출 시 보도블록의 작은 턱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한데, 시각장애인은 보행 시 2센티의 턱이 있어야 그것을 감지한다는 사소한 인식 부터였다. 삶의 현장

곳곳마다 시각장애인에게 거치적거리는 것들이 많았다. 그것들은 그간 내가 보아온 것들과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평소 다니던 길을 둘러보니 시각장애인의 보행 요소를 고려한 점자 블록은 수십 깊은 강에 위태롭게 놓인 다릿돌처럼 길 중간 중간에 떨어져 있었다. 국영 공원도 안전성과 배려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고립되기 쉬운 조건과 환경은 장애인의 자명한 현실이기에 적당히 순간을 원망하며 또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국가는 장애인 관련 법(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뉴스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서의 인권 보장을 위해 연대 의식으로 무장하여 격렬히 항의한다. 누군가는 눈썹이 틀려서 보기 싫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니터링 현장의 중심에서 맥이 풀렸다. 어느 누군가가 힘겹게 이뤄낸 공적이 무관심이란 별에 시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 역시 건조해 지고 있었다.

첫 모니터링을 하던 날 비바람을 뚫고 행사장에 들어섰고, 두 번째는 인파에 묻혀 꽤 먼 거리를 전동휠체어로 이동했었고, 세 번째는 높고 긴 계단에 막혀 결국 행사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바빠 걷어가는 사람들, 보란 듯이 건재한 계단 아래에서 장애인에게 험준한 현실 앞에 잔뜩 쪼그라든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희망보다 커져가는 회의감에 마음을 달리 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고민하다 6년 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된 ‘실로암 시각장애인 산악회’ 봉사자 분께 연락을 드렸다. 그분들이 함께 이룬 투명한 소통의 과정을 세세히 들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과 직접 통화를 했고 어느 날은 산 정상에서 영상통화가 걸려 왔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하여 그분의 세상이 검은색이 아니란 것을 조금이나마 체감 할 수 있었다.

내가 속한 사회는 장애의 본질보다 부차적 요인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생각은 십년 전과 매한가지다. 나 역시 비장애인 일 때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당연하였기에 만물의 묘려한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서 낡아 올려 쌓아야 할 보이는 것들에 치중했었다. 이웃, 지역사회, 우리나라에서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둥글게 어깨동무하

는 바람은 언제까지 몽중에서나 볼 수 있는 걸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밝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맨 위에 당근색이 그어지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감은 눈 속은 다양한 빛을 발하였다. 애국가가 끝나도록 끄지 않은 텔레비전이 지지거리는 모양이 눈 속에 펼쳐지는 것도 같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서 전동휠체어의 방향을 천천히 조절해 보았다.

직진하다 베란다 문턱에 쿵. 다시 돌리다 소파에 쿵. 안방으로 진입하려다 식탁에 쿵. 그러다 목표점인 방안으로 들어오는 코너의 모서리에 발가락을 찍었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발가락에서 묻어낸 검붉은 액체가 양말에 느리게 퍼지고 있었다. 목표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상황에 부아가 치밀었다. 감각이 없으니 통증을 느낄 수는 없었다. 몸은 고장 난 전화기처럼 멍통이지만 희한하게도 그것을 보는 눈이 아프다고 알려주었다.

순간 머리가 뱅 돌았다. 중도장애인으로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장애를 등에 짊어질 것인가. 내 몸에 흡착 시켜 안고 갈 것인가. 짊어진다면 평생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품고 간다면 가슴 속 후더운 열정을 두루 나누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외출 준비를 하며 상처 난 발가락에 밴드를 둘러주는 엄마의 손길을 바라본다. 쉽사리 아물지 않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약을 바르듯, 모니터링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자연적 그리고 인공적 장애물을 분해시키는 촉진제와 같은 역할이 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기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현장에 동참하여 보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모니터링이 보여주는 현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웃의 불편함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찾아보고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미뤄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곧바로 관심이란 마음씨앗을 심어준다면 반드시 옹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마침내 우리 사회가 통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융합이 될 수 있기를 믿고 기대한다.

## 센터는 지금



5월 26일~27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전체 모니터단 교육



8월 18일 제5차 의정모니터단원 연구모임(창원)



8월 21일 부산광역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웹와치 주요 사업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센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ablemonitor>)가 개설되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 지역모니터링센터

|             |                |                                      |
|-------------|----------------|--------------------------------------|
| 서울 (대표:이권희) | T.02.833.905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5층         |
| 부산 (대표:김호상) | T.051.582.7116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35-14 우신빌딩 2층        |
| 광주 (대표:김 량) | T.062.673.0420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61-2 1층              |
| 대전 (대표:안승서) | T.042.286.0036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39-4번지 동진프라자 332호      |
| 울산 (대표:성현정) | T.052.289.1254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49-7 새한빌딩 5층           |
| 경기 (대표:안미선) | T.031.906.3095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78-2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
| 충남 (대표:박광순) | T.041.579.2752 | 충남 천안시 두정동 1903 태산빌딩 202호            |
| 전북 (대표:김미아) | T.063.229.1989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47-1               |
| 경남 (대표:문숙헌) | T.055.283.1313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8-1번지 토월복합상가 3층 303호 |
| 제주 (대표:고현수) | T.064.751.8097 | 제주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                 |